

# 대구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과정

- 발의일자: 2022. 11. 10.
- 발 의 자: 이금태 의원 외 7명
- 회부일자: 2022. 11. 11.
- 상정일자: 제23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 
제1차 사회도시위원회(2022.11.24. 상정 · 의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: 이금태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정의,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(안 제1조~제3조)
-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사업과 위탁에 관한 사항 (제5조~제6조)
- 교육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협력체계 구축과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(제8조~제9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채은실)

- 본 조례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.
- 조례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보호·지원사업, 사업의 위탁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이 외에도 주민 교육 및 홍보,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규정하여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음.
- 조례 제정을 통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제고하고,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,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하다고 사료됨.

### 4. 심사결과: 원안가결